

신문윤리 50년

제6장

# 신문윤리 강화 노력 전개



50<sup>th</sup> Anniversary

## 제1절

## 외환위기 도래와 언론정화

## 1. IMF 외환위기 국면 도래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크게 침체되기 시작했다. 1995년 미국과 일본의 역플라자합의로 인해 달러의 가치는 높아지고 엔화 가치는 크게 하락하였다. 반면 달러에 고정된 원화는 상대적인 고평가가 유지되었다. 수출시장에서 일본 제품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우리 제품들은 엔화가치의 하락으로 가격경쟁력을 상실, 우리나라는 무역수지에서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적자 폭도 예상보다 커 1996년에만 무려 230억 달러에 달하는 경상수지 적자를 보였다.

이렇게 적자 폭이 늘어나면서 국내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럽게 환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렸지만, 국민소득 1만 달러에 집착한 정부에서는 환율 조정보다 외환의 규제완화와 금리 인상으로 환율의 고평가를 유지했다. 그러나 1달러에 800~900원으로 고평가된 상태에서 유지되는 원화 환율은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악화시켰으며, 영업이익률을 급격히 줄여 들게 하였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일부 기업들로 하여금 오랫동안 발전시켜온 그 회사 고유 업종의 경쟁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판단이 서게 하였으며, 이에 따라 오래 동안 지켜왔던 고유 업종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업아이템을 찾도록 유도하였다. 삼성의 자동차산업 진출, 한보의 제철소 건설, 진로의 유통 및 건설회사 설립, 해태의 전자산업 진출 등 신사업 추진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러한 신사업 진출에 필요한 자금은 대부분 외채를 차입하여 충당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태국의 바트화 투기로 전개된 아시아권의 외환위기가 인도네시아, 대만, 홍콩 등을 거쳐 우리나라로 번져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밀려들기 시작한 외환위기는 1997년 초 한보의 부도사태를 유발했으며, 국내 기업들의 과잉투자과 이윤율 하락을 부채질하였다. 여기에 기아자동차의 부도가 이어지면서 외자의 급격한 유출이 진행되었는데, 정부에서는 이를 금리인상과 외환시장 개입으로 버텼다.

그러나 이렇게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어 결국 1997년 12월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외환위기 국면을 맞아야 했다. 과도한 외환 차입으로 인한 총외채 잔액이 급증하고, 이에 따른 외환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부도위기에 처한 것이었다. 우리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환율안정을 위한 긴급구조자금을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같은 해 12월 IMF로부터 총 21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 받게 되었다. 이른바 IMF시대가 개막된 것이었다.

## 2. 사이버언론과 언론비리 문제 대두

국내 경제에 IMF 외환위기의 어두운 그림자가 엄습해오던 1990년대 중반부터 언론계는 사이버언론 문제와 언론사간 경쟁 심화로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다. 언론계에서는 기자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신문윤리강령을 개정하면서까지 언론의 자정과 윤리회복을 도모했지만 제대로 길을 찾지 못했다. 언론자율화, 언론노조의 활성화, 신문경영과 기술의 진전, 지면의 혁신 등을 통해 언론의 윤리의식 제고와 자정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IMF 외환위기 국면이 도래하면서 국내 신문사들은 극심한 경영난에 봉착하게 되었고, 이는 신문사 간에 불공정한 판매경쟁을 불러왔으며 대형 언론비리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국내 경제의 전반적인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이버언론이 범람하면서 IMF 환란 1년 후인 1998년 10월 사이버 언론 신고 접수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4배인 62건에 이르렀다. 사이버

언론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과거 기업체 중심에서 자영업자 일반시민 심지어는 행정기관으로까지 확산되었다.

사이비언론의 유형도 다양해져 언론계 내부적으로 무자격 기자에 대한 기자증 판매, 신문사 등록 시 자본금 가장 납입, 기자 무보수 고용 및 임금 체불, 지사·지국 설치 명목으로 주재기자에 보증금 갈취 등이 횡행했다. 대외적으로는 상대방의 약점을 미끼로 금품 갈취 및 광고 강매, 구독 강요, 간행물 강매, 부당 이권개입, 홍보성 기사 게재 대가로 촌지 수수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였다.

이에 정부는 1998년 9월 9일 '사이비언론 대책회의'를 열고 사이비언론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등록 후 1년 이내에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간하지 않았거나, 1년 이상 발행이 중단된 정기간행물 등 부실언론 640여종의 등록을 취소했다. 노동부와 국세청은 언론사의 임금체불과 탈세여부에 대한 실사에 착수했으며, 경찰청은 사이비언론 수사전담반을 가동, 집중단속에 들어가기도 했다.

한편, IMF 관리체제로 국가경제가 파탄 나고, 이로 인해 경제주권이 상실된 상태에서 1998년 2월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경제재건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치권력과 결탁한 불법대출이 성행하고 코스닥시장에서 주가조작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이른바 '정현준 게이트', '진승현 게이트', '이용호 게이트', '윤태식 게이트'가 꼬리를 물고 일어났던 것이다.

2000년대 들어 속칭 '게이트'라는 대형 부패사건이 터질 때마다 언론인들이 연루됐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특히 경제부 기자들 사이에서 주식, 스톡옵션 제의를 빌미로 보도를 요청한 벤처기업이 적지 않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들려왔다. 이밖에 파크뷰 아파트 사전분양 사건, 연예계 PR비 제공사건, 영화담당 기자 금품수수 사건 등이 잇달아 터지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언론인이 연루된 비리사건은 이른바 '윤태식 게이트'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은 대가성이 있는 주식 200주를 기준으로 그 이상을 무상 또는 저가로 받은 경우는 구속하고, 200주에는 못 미치더라도 대가

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불구속기소한다는 내부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일단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소환조사를 한 언론인은 10여 명이 었다. 청와대 출입 사진부장들도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 주식 400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인 4만~6만 원대에 구입했다는 것이었다. 대가성이 명백하지는 않으나 2000년 1월 윤태식 씨가 참석한 청와대 '벤처와의 만남'을 촬영한 후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샀다는 혐의를 받았다.

여기에 IMF 이후 주춤하던 기자에 대한 공짜 해외여행이 다시 부활하였다. 1999년 3, 4월 금융감독위원회 출입기자단은 대우그룹이 제공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이 기자단은 성업공사가 제공하는 해외투자설명회에 풀기자단도 보냈다. 같은 시기 기상청 기자단은 기상청의 슈퍼컴퓨터 공급업체인 일본 NEC 초청으로 일본을 다녀왔다. 또 농림부 기자단은 1999년 4월 19일부터 11일간 유럽여행을 다녀왔다. 기자단이 외국기업의 로비성 해외여행 제안마저 뿌리치지 못하자 기자들이 집단적으로 윤리의식이 마비됐다는 비판까지 받게 되었다.

이렇게 외환위기 국면 이후 경제난이 심화되고 광고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일부 언론사의 사이비 폐해, 기자들의 비리가 확산되어 정부의 단속 역시 부쩍 강화되었다. 이를 빌미로 정부는 언론정화를 내세운 각종 정책과 관련법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아울러 신문업계 전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국민에게 심어지게 되자 일부 시민단체는 언론인윤리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사회 전반에서 비판의 소리도 높아만 갔다. 언론계 내부에서는 윤리강령을 아무리 제정하고 확인해도 소용없다며 취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촌지문화를 근절할 수 있다는 자성의 소리도 터져 나왔다.

### 3. 자율화 역행하는 언론개혁

언론계의 혼란상은 정부에 언론개혁의 명분을 제공, 그동안 노력해온 언론자율화에 역행하는 제도의 도입을 불러오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먼저 신문

사 간의 독자확보 경쟁으로 인한 무차별적인 경품제공, 무가지 제공기간의 연장과 같은 불공정한 판매행위로 인해 신문시장이 혼탁해지자 1997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업에 관한 특별고시'를 제정했다. 이 신문고시는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의 일환으로 1999년 1월 폐지됐으나 훗날 새로운 내용의 신문고시가 마련돼 신문시장을 더욱 옥죄었다.

끊이지 않는 언론비리 역시 정부의 언론개혁운동과 맞물려 언론사에게 화살이 돌아갔고, 이는 급기야 김대중 정부와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이는 1997년 12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기도 했다. 당시 새 정부를 지지하던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언론개혁에 대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이들 언론개혁 세력은 일부 언론매체들이 특정인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노골적으로 편파·왜곡보도를 했다는 시각을 갖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언론의 정화'를 넘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권력화된 언론을 방치하고는 진정한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어렵다는 데 새 정부와 의견을 같이 했던 것이다. 이에 힘을 얻은 정부는 언론사의 소유·경영구조의 개선과 편집권 독립과 같은 문제에 집중했다.

이후 언론개혁 움직임은 빠르게 진전되어 1999년 11월 2일 언론개혁시민연대와 기자협회, 언론노련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권과 정부가 법·제도 정비 등 언론개혁을 위한 여건 조성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하며 신문개혁을 촉구했다. 언론사와 언론 종사자는 언론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여야 정당은 국회에서 반드시 정기간행물법을 개정하고 통합방송법안을 통과시키며 언론발전위(가칭)를 구성하라는 주장이었다.

아울러 정부에 대해 전 언론사 정기 세무조사 결과 공개, 언론사와 계열사 및 관계사 간의 부당 내부거래와 무가지 살포 등 불공정행위 시정을 위한 조치 강구,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매일, 연합뉴스 주식 처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2000년 1월에는 언개련과 기자협회가 공동으로 1988~1999년 사이에 드러난 언론인 비리를 묶은 자료집 '언론인 비리백서'를 발간했다.

비리백서는 1988년부터 10여 년 간 기자협회보, 미디어오늘, 월간 말, 언론노보 및 일간지에 보도된 언론인 관련 비리와 부패관련 기사를 언론 사주 및 간부 비리, 촌지 사건, 촌지성 해외취재, 방송비리, 사이비 언론 등으로 나눠 실었다. 이렇게 한쪽으로는 촌지, 사이비언론인 등 언론정화를 내세웠으나 실질적으로는 언론사 세무조사, 언론법 개정 등을 통해 메이저 신문에 대한 제재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갔던 것이다.

기자협회는 이어 2000년 4월 1일에는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민국당, 민주노동당 등 5당 정책위 의장에게 언론발전위원회(가칭) 구성을 위한 제안서를 전달했다. 기자협회는 제안서에서 "언론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국회의원 등을 망라하는 언론발전위를 구성해 국회 결의를 거친 국회의장 자문기구나 문화관광위 산하 위원회로 두고 언론발전위를 통해 정기간행물법 개정, 신문통계법이나 여론독과점 규제법 제정 등을 입법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16대 여야 국회의원 31명은 2000년 7월 13일, 언론발전위원회(언발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

언개련은 2000년 11월 13일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이 개정안은 대기업의 신문사 소유를 금지하고 1인 사주나 족벌의 지분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경영 투명성을 위해 발행·판매부수, 수입구조, 구독료, 광고료 등의 자료 공개와 편집위원회 구성, 편집규약 제정을 의무화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 같은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신문개혁 국민행동 10대 운동지침'을 발표했다. 10대 지침은 정간법 개정과 언발위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 참여, 계도지 폐지 운동, 신문사들의 탈법·탈세행위 감시, 정부에 자산 규모 100억 원 이상의 일간신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와 결과 공개 요구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소속단체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문개혁법 제정 및 국회 언론발전위 설치 촉구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가지기도 했다.

#### 4. 자율적인 심의활동 강화

2000년대 들어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기자협회 등의 언론개혁 요구는 정부의 언론개혁 의지와 만나 사이버언론에 대한 규제나 신문사 세무 조사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사실 이러한 사이버언론에 대한 단속이나 언론개혁은 언론계는 물론 사회질서 정립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이긴 했다. 그러나 자칫 언론자유 침해 논쟁을 불러일으킬 소지도 다분하였다. 국민 생활을 보호하고 건전언론 창달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언론개혁을 정부주도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신문협회나 신문윤리위원회 등 국내 언론단체에서는 정부의 언론개혁 취지에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정부 주도의 제도 개혁이나 일방적인 규제에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취지를 충분히 살려 언론개혁을 추진한다 해도 정부 주도로 이를 시행할 경우 언론자유를 크게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이는 그동안 구축해온 언론계의 자율적인 규제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란 판단에서였다.

이에 신문협회 등 언론단체는 언론 스스로 자율적인 규제와 정화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다짐하였다. 아울러 신문윤리위는 오랫동안 구축해온 자율규제 제도를 심화시켜 사이버언론을 추방하고, 언론정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2000년대 들어 급증하고 있는 독자불만 사례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독자불만처리제도 시행을 추진, 신문윤리위 본연의 임무에 충실을 기하는 것으로 언론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 5. 신문윤리위 재정의 변화

신문윤리위원회의 재정은 설립 초창기부터 1980년대 초까지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기간단체의 기부금과 약간의 제소인 수수료 등으로 충당했다. 윤리위가 언론계에서 자율적으로 설립한 기관이었던 만큼 초창기에는 운영자

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했던 것이다.

이후 1982년부터 1999년까지는 신문협회의 지원금과 방송광고공사의 공익자금으로 윤리위 재정을 충당하였다. 그러나 2000년 1월 통합 방송법이 시행되면서 공익자금 운영이 방송위원회로 넘어가게 되었고 명칭도 방송발전기금으로 변경되었다.

윤리위는 이후 방송발전기금에서 3년 동안 예산지원을 받았는데, 방송위원회의 방송무관 사업에 대한 일몰제 시행으로 예산 지원이 감소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윤리위원회는 다른 지원처를 찾아야 했다.

2002년 2월 방송위원회에서 비공식 라인을 통해 당해 연도부터 예산을 줄여야 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 이에 윤리위는 4월 들어 새로운 지원처로 문화관광부를 지목, 실무적인 대화를 통해 국고 지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윤리위원회가 국고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신규 사업에 편성되어 절차가 까다롭고 가능성도 낮다는 주무부서의 설명이 이어졌다.

이에 윤리위 사무국에서 김대성 이사장에게 이 내용을 보고하자, 김 이사장은 남궁 진 장관을 만나 담당국장이 배석한 가운데 윤리위원회의 현황을 설명하고 국고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남궁 장관은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국고로 신문윤리위원회를 지원한다고 약속하고 그 내용을 명함에 적어 국장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윤리위는 국고에서 지원을 받게 되었다.

2005년 1월 신문법이 발효되면서 같은 해 10월 신문발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이어 2006년도 윤리위 예산 역시 문화관광부에서 배정하였으나, 전년도와는 달리 당해 연도 윤리위 예산은 국고가 아닌 신문발전기금으로 지원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아울러 예산의 집행은 신문발전위원회가 맡는 것으로 결정, 통보하였다.

이렇게 윤리위는 2006년부터 신문발전위원회를 통해 예산을 지원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신문발전위원회에서 신문발전기금으로 신문윤리위원회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골자로 국회에 예산 변경 신청을 했던 것이다. 신문발전위원회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기금

집행이 3월이 되어서야 이루어져 급여지급이 늦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어 2007년부터는 독자불만처리제도 운영 예산이 2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감소하였고 2008년에는 다시 1억 3,800만 원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정상적인 사업을 수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 때문에 윤리위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발전위원회는 윤리위의 심의사업 예산까지 2007년과 2008년에 2억 5,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신문윤리위 예산 지원 현황(2004~2011년)

(단위 : 천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신문기사 심의	250,000	250,000	250,000	240,000	240,000	250,000	250,000	250,000
독자불만 처리제도 운영	150,000	250,000	250,000	200,000	138,000	139,000	100,000	100,000

신문발전위원회는 2009년 7월의 신문법 개정으로 해체되었고, 2010년 2월에 언론진흥재단이 설립되었다. 이후 신문발전기금이 언론진흥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예산의 집행 역시 언론진흥재단에서 맡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신문윤리위원회의 지원금도 언론진흥기금으로 바뀌게 되었다.

신문협회의 심의비는 신문협회 사무국에서 각 회원사로부터 청구·수령하여 매월 윤리위원회에 입금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매년 외부감사에서 지적되자 신문협회 사무국은 이 문제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비를 신문윤리위원회가 각사로부터 직접 청구·수령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신문윤리위원회는 2009년 1월부터 신문협회 회원사로부터 직접 청구하여 수령하고 있다.

## 제2절

# 독자불만처리제도 시행

### 1. 독자불만사항 발생원인

신문의 역할과 기능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사고 소식을 신속정확하게 보도하고, 지식인들의 논평 등을 통해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이 주된 것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사회의 공기로써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국가나 사회의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신문은 보도 과정을 통해 윤리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들의 불만을 야기하기도 한다.

독자의 언론에 대한 불만은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언론미디어들은 독자불만을 예방하기 위해 각사 단독으로 또는 연합하여 언론윤리강령을 만들고 자율규제에 의한 해결을 도모하거나 윤리강령을 정비하여 그 현실적 작용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기관의 취재·보도로 인한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에 대한 배려는 미흡하였다.

실제로 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은 언론기관의 취재에 의해 주소·성명은 물론이고,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생활 영역까지 보도되어,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아 집을 이사하거나 직장을 떠나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더구나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은 매우 크고, 그에 의한 피해는 일단 발생하면 원상회복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언론에 노출된 일반인이나 관련독자들의 언론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 2. 독자불만처리제도 도입 필요성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보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지만 보도 당사자나 그 가족, 친지들의 인권이나 사생활 보호도 보도의 자유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언론은 취재와 보도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또는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언론의 주의의무 부족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독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었을 경우 법이나 제도를 통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

독자들의 불만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은 범죄자와 그 관련자의 신원을 노출 시킴으로써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나 그 가족이 언론미디어로부터 취재를 당하거나 보도 등의 형태로 언론미디어에 노출됨으로써 입게 되는 사생활 침해 피해는 제2차적 피해라고 불릴 만큼 심각하여 당사자로서는 언론의 조명을 피하기 위해 전전공공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의자 가족이나 피고인의 가족들은 자신이 위치한 상황을 능동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소송의 제기로 자신의 피해를 막거나 이미 발생한 손해를 배상 받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제3의 기구에 의해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물론 주요 언론사의 경우 법률고문단이나 독자상담실 또는 사내 옴부즈맨과 같은 사내 자율규제기구를 통해 어느 정도의 독자불만 처리 기능을 맡기고 있다. 그러나 제3자 기구가 아닌 한, 그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내의 독자불만처리기구만으로는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독자의 신뢰성을 획득하기 어렵고 그 기구 구성원이 사내의 조직원간 역학 관계에서 편입국 실무자를 능가하거나 대등한 권한을 갖기 어려운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제3의 기구에 의한 독자불만처리 필요성이 대두하였고, 이를 신문윤리위원회가 담당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게 되었다. 언론 각사가 권력으로부터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것보다 자율적인 규제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차라리 제3의 기구에 맡기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군부 독재의 탄압 하에서 정부 개입을 막기 위해 언론사와 독자의 중간에 위치하는 제3자적 기구에 가까우면서도 운영의 독자성을 인정받는 기구로 조직되었다. 신문윤리위는 이후 서방선진국 못지않은 언론윤리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언론의 자율규제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하였다. 따라서 신문윤리위가 독자불만처리를 시행하는 제3의 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 3. 독자불만처리제도 도입

신문윤리위원회는 2003년 11월 24일 제12차 임시총회와 제66차 이사회에서 독자불만처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관개정안을 확정하였다. 이어 이듬해인 2004년 3월 1일 초대 독자불만처리위원회에 김두식 전 한겨레신문사 사장을 선임,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나갔다.

독자불만처리위원회는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기반으로 독자불만을 처리하였다. 신문윤리실천요강에는 '취재준칙(제2조)'과 '범죄보도와 인권존중(제7조)' 등에서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 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과잉 취재에 의한 사생활 침해 등을 금하고 있다. 독자불만처리위원회는 이같은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하여 독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타당성 있는 불만을 야기한 언론 쪽에 윤리위원회가 그 피해의 구제와 언론불만의 해결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독자불만을 처리하였다.

설치 이후 독자불만처리위원회는 독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제기된 독자의 불



## 문제점

한편 현행 독자불만처리 절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적도 있다.

독자불만처리 운영규칙을 보면 독자불만처리위원회는 신문윤리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는 기관으로서 신문윤리위원회의 제재조치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에 멈추고 있다. 그러나 신문윤리실천요강이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게 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취재준칙은 취재방법의 윤리적 한계를 정해주는 지침이기 때문에 취재대상자인 독자 일반이 입게 될지도 모르는 피해를 줄이는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취재의 피해는 많은 범죄 사건에서 취재자가 집단적으로 한 사람의 피의자에게 몰려들어 인권을 유린하거나 집단적 괴롭힘을 주는 것을 막아야 최소화되기 때문이다.

보도준칙 등을 위반한 제반 보도피해와 그에 따른 독자불만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보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등을 구제하기 위해 조정, 중재, 권고, 소송 지원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야 한다.

나아가 독자불만처리위원회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의 취재 준칙에 열거한 사항이 아니라도 윤리강령 전반에 흠어져 있고 인권 구제 기관이 일반적으로 도모하는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과 관련된 불만도 처리해 주어야 한다.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 피의자·피고인의 가족, 청소년 피의자·피고인 등의 취재와 보도에서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나 과격 취재 등에 따른 불만도 짚어야 한다. 이들 취재대상자들은 스스로의 인권을 지켜 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신문이 이 준칙에 어긋난 행동을 하거나 독자가 이 기준의 적용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독자불만처리위원회는 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독자불만처리위원회는 신문윤리위원회의 불만처리결과에 따라 운영규정 제9조에 따른 제재에서 더 나아가 각 언론사의 자율적인 정정보도 또는 사죄광고 게재 등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독자불만처리위원회나 신문윤리위원회가 보도피해와 같은 인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 구제를 게을리 하게 되면 정부의 직접 개입이 불을 보듯 뻔하고 그만큼 우리의 언론자유는 위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독자불만처리위원회와 신문윤리위원회는 현행 처리절차의 문제점을 인식, 이를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이를 시정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제3절

# 자율규제 강화와 윤리강령 개정 추진

## 1. 자율규제 강화 추진

2000년대 들어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의 언론개혁 추진 움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신문윤리위원회는 자율규제 강화와 독자불만처리제도 도입을 통해 윤리위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했다.

윤리위원회는 2000년 12월 27일, 제728차 회의를 열고 당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스포츠신문들의 음란 선정성 기사에 대응하기 위해 위원장 명의로 4개 스포츠신문 발행인에게 자제를 권고하는 공한을 보내기로 했다. 이어 2001년 1월 31일 열린 제729차 회의에서 이상철 위원(조선일보 편집부국장)이 기초한 서한을 채택, 4개 스포츠지(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스포츠투데이, 일간스포츠)에 발송하였다. 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스포츠신문의 선정성 음란기사 자제당부 서한

귀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도덕성 상실과 날로 무너지 내리는 성 윤리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회에까지 음란 문화가 급속히 전파·확산되고 있어 큰 걱정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 걱정과 비판의 한 부분을 스포츠 신문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2000년 한 해 동안 귀지를 비롯한 4개 스포츠 신문을 심의하여 음란 선정성 기사와 광고에 대해 공개경고 14건, 비공개경고 48건, 주의 35건

등 모두 97건의 제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제재 숫자는 가능한 한 제재를 최소화하려는 위원회의 고심의 결과임을 감안할 때, 실태는 훨씬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 신문윤리위원회의 거듭되는 주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신문들의 보도·광고 양태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수위가 더욱 높아가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스포츠지들의 지면에는 청소년들의 성적 호기심을 충동하고 자극하는 기사들이 하루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비뚤어진 성문화를 고발한다는 명목으로, 낮 뜨거운 현장들을 한층 선정적으로 묘사하는 보도까지 줄을 잇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정적 기사 아래쪽에는 청소년들의 탈선적 호기심과 음란을 조장하는 더욱 낮 뜨거운 광고들이 지면을 메우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신문윤리위원회의 위원들은 제728차 회의(2000. 12. 27)에서 현재 스포츠지들이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 등에 관해 깊은 이해를 표했습니다. 위원들은 그러나 스포츠지들의 지나친 음란성 선정성 보도·광고는, 그 주 독자층이 청소년들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주의나 경고만을 되풀이하기 어려운 시점에 이르렀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위원들은 따라서 스포츠지들이 굳은 결의 아래 자율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에 따른 보다 엄격한 제재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으고, 4개 스포츠 신문의 발행인들에게 이 뜻을 담은 서한을 보내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 서한은 그 결의에 따른 것입니다.

신문윤리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언론의 편집 방향 등에 대해 불필요한 간섭이나 강제를 하지는데 있지 않습니다. 신문이 자칫 품위를 잃을 때, 이를 지적하여 스스로 고치게 함으로써 외부로부터 올 수 있는 더 큰 강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보다 건강한 신문, 무엇보다도 가족과 자녀들에게 떳떳이 보여줄 수 있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거듭 귀지의 발전을 빕니다.

2001년 1월 31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김 석 수

그러나 윤리위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지는 물론 일간지 연재

소설 등에서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인 내용이 계속 노출되곤 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정청래의원은 2006년 10월 13일 열린 문화관광부 국감에서 “문화일보의 연재소설 ‘강안남자’가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28차례나 주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 연재되고 있다”면서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대책을 물었다. 이에 김명곤 장관은 “신문윤리위원회와 협의해서 좀 더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같은 해 10월 23일 신문발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의원은 다시 문화일보의 강안남자에 대해 질의를 하면서 “일간신문이라 할지라도 연재소설이나 연재만화 등에서 현격하게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저해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신문윤리위원회는 대책을 마련, 2006년 12월 13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된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중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신문윤리위원회에서 청소년 유해 연재소설·만화·광고에 대해 제재를 강화한 것을 감안하여 ‘업계의 자정활동을 지켜본 뒤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법안은 통과되지 않고 계류상태로 남게 되었다. 한편 신문윤리위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는 다음과 같다.

#### 의견서

귀 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청소년보호법 중 개정 법률안 가운데 특히 49조 ①항 제1호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합니다.

1. 제1호에 명시된 특수 일간신문은 현재 국내에서 발행 중인 스포츠신문이 그 대상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스포츠신문은 한국신문협회에 가입,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각각 준수하기로 서약한 언론매체들이고 이를 각각 발행

매체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스포츠신문의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준수를 심의하고 그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이같은 기능수행은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언론인들의 자율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기왕에 스포츠신문들이 우리 위원회의 자율적인 규제를 수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면, 이는 이중의 규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보호, 신장한다는 점에서 귀 위원회의 개정안 제49조 1항 제1호의 신설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스포츠신문을 비롯한 일간 종합신문들의 '언론의 자유' 수호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광고윤리강령의 내용을 더욱 강화하고 제반 강령위반에 대해서는 공개경고 등의 제재를 넘어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의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함께 윤리위는 문화관광부에서 기사형 광고에 대한 실태조사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정보를 접하고 기왕에 추진해오던 기사형 광고에 대한 실태파악에 보다 많은 관심을 쏟았다. 문화관광부에서는 기사형 광고가 독자들의 오해를 불러와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신문법 제11조(광고) ②항에 따라 2006년부터 적극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하였는데, 윤리위에서는 이미 2001년부터 심의실을 통해 이를 규제해 오고 있었다.

2001년 36건에 달했던 기사형 광고는 2002년 52건, 2003년 62건 등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나 윤리위의 지속적인 규제로 이후 급감하여 2004년 9건, 2005년 26건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한편 2000년대 초반 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운영철 위원장과 김석수 위원장이 각각 헌법재판소장과 국무총리에 취임, 개인적으로는 물론 신문윤리위원회로서도 경사를 맞았다. 운영철 위원장은 2000년 9월 15일 헌법

재판소장에 취임하였으며 후임 김석수 위원장은 2002년 8월 국무총리에 취임하였다.

## 2. 신문윤리강령 부분 개정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신문윤리강령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언론 3단체는 신문윤리강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1996년의 신문윤리강령 전면 개정에 이은 두 번째 개정은 편협 산하 신문윤리강령개정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안을 언론 3단체가 승인, 공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전면 개정 10여년 만에 신문윤리강령을 개정하게 된 것은 2000년대 들어 미디어환경이 급변한 까닭이었다. 인터넷을 필두로 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뉴스의 유통방식에 혁명적인 변화를 몰고 왔다. 자연히 신문윤리실천요강의 일부 조항들이 언론현실과 충돌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신문윤리위원회로서는 엄존하는 기존 실천요강에 맞추어 개별 기사들의 윤리준칙 위반 여부를 심의할 수밖에 없는데, 지적을 받은 언론사들이 과거의 잣대에 따른 무리한 간섭이라며 반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났다.

이렇게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윤리강령 개정요구가 제기되던 2007년 6월 한국기자협회에서 신문윤리실천요강의 전화취재 조항에 대해 개정을 요구해 왔다. 정부의 전자인식 출입문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대면 취재가 어렵게 된 상황에서 현행 신문윤리실천요강의 취재준칙 중 '전화취재' 조항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신문윤리강령의 개정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던 신문윤리위에서는 기자회견의 신문윤리실천요강 개정의견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내용들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정리하여 언론 3단체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신문윤리위는 자체적으로 검토한 사항과 심의실의 건의, 신문윤리강령 개정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제기된 문제 등을 종합 정리하여 2007년

12월 제805차 윤리위원회에서 시안을 작성하고, 2008년 3월 열린 제86차 이사회에서 의결, 3단체에 전달하였다.

편협에서는 신문윤리위 의견을 토대로 2008년 7월 윤리강령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처음에는 윤리위원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일부 언론사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다가 이후 정식으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개정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으로 김형기 조선일보 편집부국장(위원장), 박원재 동아일보 경제부장, 설원태 경향신문 특집기획부 선임기자, 정병진 한국일보 논설위원(신문윤리위원회 위원), 채인택 중앙일보 피플앤 에디터 등 중앙일간지 중진 언론인 5명을 위촉했다.

개정위원회는 일선기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국내외의 다양한 윤리준칙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끝에 2009년 1월 23일 개정시안을 마련했다. 개정위원회가 작성한 시안에 신문협회와 기자협회의 보완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확정했다.

개정위원회에서 처음 윤리강령 개정작업에 착수할 당시에는 강령의 존폐 여부까지 검토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사실상 제정에 준하는 전면적인 개정을 거친 바 있는 현행 강령과 실천요강의 취지와 결과물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독자들의 반론요구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소송이 급증하는 등 잘못된 보도에 대한 책임추궁 장치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강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이 언론사와 언론인들에게 사법적 수준의 강제를 가하는 규제라기보다는 언론산업 종사자들이 공유해야 할 최소한의 윤리수준을 제시하는 선언적 자율규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현시점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만 제한적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가장 큰 쟁점은 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②항(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이었다. 기존 요강은 “언론사와 언론인은 타 언론사의 보도와 평론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제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과거에는 언론사가 인용할 수 있는 뉴스소스가 AP와 같은 우수한 통신사나 NYT 같은 세계적인 신문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검색어 하나만 치면 온라인의 바다에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정보

들이 넘쳐흐른다.

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나 각종 단체들은 대부분 자기네 홈페이지나 다른 웹사이트를 이용해 공식발표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아무 제한 없이 공개하고 있다. 개정위원회는 그런 ‘공개된 1차 정보’에 대해서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인정하는 쪽으로 이 조항을 개정했다.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 존중) ⑤항(피의자의 촬영 금지)도 의미있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기존 요강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형사사건의 피의자를 촬영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현행범과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돼있다. 요강의 표현이 불필요하게 단정적일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현행범도 사진을 보도하면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준칙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원회는 이를 “형사사건의 피의자, 참고인, 증인의 사진을 보도할 때에는 최대한 공익과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바꿨다. 피의자 사진 공개 여부를 사실상 언론사의 자체 판단에 위임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그 얼마 후에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얼굴 공개를 둘러싸고 큰 사회적 논란이 벌어졌으며, 결과적으로 흉악범 사진은 보도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확정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언론인은 개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기해야 하며, 건전한 여론형성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의 중요한 공공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또한 특정 지방, 종교, 인종 등의 이유로 개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 ③(사회적 책임) 언론인은 개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기해야 하며, 건전한 여론형성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의 중요한 공공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신설〉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언론인은 지역간, 계층간, 성별간 갈등을 야기하는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을 차별해서도 안 된다. 언론인은 아울러 장애인, 외국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 제2조 취재준칙

- ④(전화취재) 기자는 전화로 취재할 때 먼저 신분을 밝혀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취재원이 취재요청을 거절할 경우 거듭된 통화의 연속적인 반복으로 취재원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 ▶ ④(전화취재) 기자는 전화로 취재할 때 신분을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취재원에 대해 최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

## 제3조 보도준칙

- ⑤(보도자료의 검증과 영리이용 금지)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와 보도자료는 사실의 검증을 통해 확인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영리적 목적으로 발표된 홍보자료를 경계해야 한다.
- ▶ ⑤(보도자료의 검증)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와 홍보성 보도자료는 사실의 검증을 통해 확인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⑥(피의사실의 검증보도)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사실은 진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피고인 또는 피의자 측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⑥(피의사실의 보도)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피의사실은 진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피고인 또는 피의자 측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제4조 사법보도준칙

- ②(판결문 등의 사전보도 금지) 언론인은 판결문, 결정문, 공소장 및 기타 사법문서를 사전에 보도·논평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취재원이 사법문서에 포함된 내용을 제공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 ②(판결문 등의 사전보도 금지) 기자는 판결문, 결정문 및 기타 사법문서를 판결이나 결정 전에 보도·논평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취재원이 사법문서에 포함된 내용을 제공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 보도보류시한

기자는 취재원이 요청하는 합리적인 보도보류시한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 ▶ 기자는 취재원이 요청하는 보도보류시한에 대해 합리적인지 판단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①(보도보류시한의 연장 금지) 기자는 자의적인 상호협정으로 취재원이 원래 요청한 보도보류시한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 ▶ ①(보도보류시한의 연장 금지) 기자는 자의적인 상호협정으로 보도보류시한을 정하거나 연장해서는 안 된다.
- ②(보도보류시한의 효력 상실) 보도보류시한은 한 언론사가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그 시점부터 다른 언론사들도 지켜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 ▶ ②(보도보류시한의 효력 상실) 보도보류시한은 시한을 정한 목적에 위배되는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언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의 형사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범죄에 연루된 정신이상자와 박약자, 성범죄에 연루된 피해자 및 무관한 가족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이들의 신원을 밝히는데 신중해야 한다.

- ▶ 언론인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의 형사사건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범죄에 연루된 정신이상자와 박약자, 성범죄에 연루된 피해자 및 무관한 가족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②(정신이상자의 익명존중) 기자나 편집자는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정신이상자 또는 박약자로 밝혀질 경우 면책되는 점에 유의하여 신원을 밝히는데 신중해야 한다.

〈삭제〉

- ▶ 〈신설〉④(자살보도의 신중)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 자살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묘사 등 대중의 호기심에 영합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 ⑤(피의자 촬영 금지) 기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형사사건의 피의자를 촬영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현행법과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참고인 등의 촬영 금지) 기사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 아닌 참고인 및 증인을 촬영하거나 보도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통합>⑤(피의자 및 참고인 등 촬영 신중)기사는 형사사건의 피의자, 참고인 및 증인을 촬영하거나 사진 또는 영상을 보도할 때는 최대한 공익과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

####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②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 언론사와 언론인은 타 언론사의 보도와 평론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제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 ②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 언론사와 기사는 타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제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복수의 매체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는 예외로 하며, 출처가 여럿일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 개정에 이어 윤리위원회의 정관과 운영규정도 개정했는데, 이는 앞서의 청소년보호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윤리위원회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에 따른 것이었다. 그 핵심내용은 공개경고의 경우 신문협회 전 회원사의 지면에 결정주문과 이유 요지를 게재하게 하는 것과 선정성이 지나쳐서 연속하여 3회 이상 경고를 받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윤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수를 4인으로 늘려 윤리위원 정원을 15인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윤리위원의 정원을 늘리기로 한 것은 인터넷신문에 대한 심의를 염두에 둔 것이었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13명의 위원으로 운영되다가 2011년 인터넷신문심의위원회가 독립기구로 설립되면서 사문화되었다.

### 3. 현안 문제에 대한 의결

2007년 9월 학력위조사건으로 사회적인 파문을 일으킨 신정아 사건을 다루면서 문화일보는 신정아 씨의 누드사진을 게재하여 논란이 되었다. 신정아 씨는 문화일보 기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서울고등법원 민사 13부에 문화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신문윤리위원회에서는 문화일보와 신정아 씨의 법정공방과는 상관없이 2007년 9월 28일 제802차 회의를 열고 현안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토의를 하였다.

위원들은 회의에서 문화일보 2007년 9월 13일자 1면 「신정아 누드사진 발견」 제하 기사 및 3면의 관련 사진 2장은 출처가 불분명한 사진과 객관적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익명의 인물들의 발언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불확실한 사실을 선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신문의 품위를 훼손함은 물론 신문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 신문사가 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같은 면에 2단 이상 크기의 사과문과 함께 결정 주문 및 이유 부분 요지를 게재하도록 결정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신정아 씨 누드사진 게재 사건이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큰 사안이라 보고 후속조치를 논의하였다. 먼저 윤리위는 소송이 제기될 사안에 대해서 윤리위원회가 먼저 제재조치를 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 보기로 하였다. 법정에 갈 사안을 윤리위원회에서 제재하고 또 법정에 가고, 나중에 다시 언론중재위원회로 갈 수도 있어, 이중 삼중으로 제재하는 모양새가 연출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윤리위는 문화일보에 대해 2단 크기 이상의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한 데 대해 문화일보 측에서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토의하였다. 본 건이 소송으로 갈 경우 통상적으로 문화일보에서 사과문을 게재하면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위의 사과문 게재 통보를 무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토의결과 문화일보에서 윤리위원회의 통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강제로 실행시킬 방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4절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정

## 1. 인터넷신문의 출현

우리나라에 인터넷신문이 처음 출현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였다. 1980년대 중반 자사의 신문 기사를 PC통신에 제공하던 신문사들이 1995년 3월 국내 최초로 중앙일보가 인터넷을 이용해 선보였으며 이어 1996년 9월 동아일보가 '마이더스동아'라는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구축하면서 본격적인 인터넷신문 시대가 열렸다.

본격적인 인터넷신문은 1998년 패러디 신문인 <딴지일보>가 등장하면서부터였다. 이후 정보화 사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다양한 인터넷신문이 잇달아 선보였다. 그 가운데 <오마이뉴스>가 종합 일간지를 내세우고 있을 뿐 대부분은 교육·종교·지역소식 등의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은 주류 언론에 대항하는 새로운 개념의 언론으로, 주로 대안 언론을 표방하며, 중산층 위주의 보수적 시각에서 벗어나 소집단이나 특정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장진입 장벽을 피하기 위해 지역신문, 1인 저널리즘 등과 같이 적은 자본과 인력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기존 언론의 시각과 사회질서에 매우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들 매체는 정치권력과 자본 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점을 활용해 민감한 이슈를 거침없이 다루며, 시민 기자, 온라인 기자 등이 취재현장에서 자칫 지나칠 수 있는 여러 사건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기사화하고 있다. 때로는 독설과 야유를 퍼붓기도 한다.

인터넷신문은 뉴스 소비자인 독자들을 제작에 참여시켜 쌍방향 커뮤니케이

그럼에도 윤리위는 법정소송으로 발전하기 전에 윤리위원회에서 먼저 규제를 내려도 괜찮은지의 문제와 제재수위를 사과로 할 때 문화일보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의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열띤 토의를 벌인 끝에 일단 제재 수위를 '사과'로 하여 통보하기로 했다. 소송을 제기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설사 법정소송으로 이어질지라도 그것과 별도로 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까닭이었다.

문화일보가 윤리위의 제재 내용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윤리위로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인식도 이런 결정을 낳은 배경이 되었다. 실제로 신문윤리위는 자율심의기구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재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다. 또한 심의내용에 대해 해당 신문사가 반발할 경우 적절한 규제권한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문화일보가 윤리위 회원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 반발할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하거나 문화일보에 대해서는 심의를 아예 하지 않는 방법으로 또 다른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한편, 문화일보의 신정아 씨 누드 사진 게재에 대한 법정공방은 이후 2011년 1월 18일 항소심 재판에서 "신 씨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등 모든 법률적 청구를 포기하고 문화일보는 신 씨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선고로 마무리되었다.

션을 활성화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에 의해 일부 매체는 영향력 면에서 웬만한 신문이나 방송에 육박할 만큼 성장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사의 신뢰도가 낮고 폭로성 기사와 흥미에 치중하는 등 대안언론으로 자리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기존 인쇄매체의 기사들을 단순히 온라인상에 옮겨 신는 수준에 불과했던 온라인 신문들은 1990년 말부터 2000년 초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기존 종이매체의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지 않고, 오직 인터넷으로만 기사를 제공하는 독립형 전문 인터넷신문이 등장했던 것이다. 이들은 독자적인 취재-편집 시스템을 갖췄으며, 인터넷으로만 뉴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인쇄매체 기반 뉴스사이트들과 뚜렷이 구별됐다. 그야말로 순수한 의미에서 인터넷 매체가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2000년 1월 증권·금융 전문의 인터넷 신문 〈머니투데이〉를 시작으로 〈아이뉴스24〉, 〈이데일리〉 등 독립 인터넷 신문사들이 속속 등장했다. 이 무렵 외국에서 상업적 성공을 거둔 'CNET', 'ZDNet', '인터넷닷컴' 등 정보기술(IT) 분야에 특화된 인터넷 뉴스 사이트들이 직접 진출하거나 국내 자본과 제휴하는 등의 형태로 앞 다퉈 뉴스서비스를 시작했다.

20명 내외의 기자들로 운영되던 이들 독립 인터넷 신문들은 증권, 재테크, 정보통신 관련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했다. 사이버 주식투자의 급증과 국제 경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현실, IT나 금융계열의 종사자들이 비교적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들은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미디어로 뿌리내리는데 성공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자 가디언 등은 노 대통령을 네티즌이 뽑은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형성된 새로운 소통 구조와 대안 미디어로 등장한 인터넷 신문이 아니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기성 정치 구조의 틀을 깨고 당선에 이르는 성공을 거두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독립형 인터넷 신문들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오

마이뉴스'는 시민기자제도를 도입하여 평범한 시민들에게 발언권을 부여하고, 기성 언론과는 다른 시각을 제시하며 대안적 미디어의 역할을 했다. '프레시안'과 같이 전문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인터넷 사이트나 '논객 사이트'들은 부실한 한국 사회의 담론 공간을 확대하는 역할을 했다. 한국 저널리즘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던 경제 저널리즘 영역에서는 경제 전문뉴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신문들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2. 매체의 난립과 윤리문제 발생

문화관광부의 2007년 4월 6일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715개의 인터넷신문이 등록되어 있다. 서울에서만도 그 수는 329개이다. 이후 인터넷신문은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10년 현재 야후에만 60여개의 인터넷신문이 활동하고 있다. 인터넷에선 소규모의 인력과 자본, 시설과 장비로 저널리즘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단기간 내에 많은 인터넷신문이 생겨났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구조가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다. 그러나 인터넷과 웹이 가진 혁명적 가능성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지 현실은 아니다. 자칫 윤리적인 문제를 소홀히 다룰 경우 심각한 병폐를 낳을 것으로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실제로 전경련 산하 협회에서 427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46%가 인터넷신문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 강압적인 광고, 협찬 요구, 소문이나 낭설에 근거한 기사 작성 등 '언론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인터넷신문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이다.

인터넷신문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기사의 '신뢰성 부족'이다. 이밖에 37%가 선정적인 낚시제목, 17%는 자체 뉴스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러나 이렇게 열악한 상황임에도 피해를 본 기업들의 법적 대응은 3%에 불과하였다. 비효율적인 소송절차와 낮은 피해구제 가능성, 보복기사 게재 가능성 때문에 법적 대응을 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매체의 난립과 인터넷신문에 내재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이 사회문제로 부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갔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같은 기관을 설치해서라도 현행 3인으로 돼 있는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인력 등록기준을 상향 조정해 기사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오보나 왜곡보도가 빈번한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발행정지, 등록취소 등 퇴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인터넷신문도 종이신문과 마찬가지로 정보가 가진 진실성과 중요성이 확보되어야만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서의 유용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에서 전문직 저널리즘을 수행하는 주체들은 신뢰와 권위를 시급하게 확보해야 하는데, 그 기본이 인터넷신문의 윤리 정립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신문의 자율 규제 문제가 자연스럽게 대두하였고 신문윤리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인터넷신문의 자율 규제가 필요한 이유로는 첫째, 인터넷신문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신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자율 규제를 통해 아직은 형성 단계에 있는 온라인 저널리즘의 규범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뒤를 따랐다.

이렇게 인터넷신문에 대한 자율규제 여론이 형성되면서 인터넷신문협회와 신문윤리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자율규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자율규제 방안을 수립하면서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추상적인 규범은 실제 저널리즘 실무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 아래 광범위한 동의를 얻는 구체적 규범 틀을 완성하고자 노력했다. 자율규제에서는 특정 규범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규범에 대한 상호 소통이 이루어지고, 상호 동의할 수 있는 규범들을 조합해 나가도록 한 것이었다.

다만 자율규제는 단순히 일탈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매체에서 자율규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배우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온라인 저널리즘의 가치와 현실적 한계에 대해 성찰하면서, 온라인 저널리즘의 윤리적 수준을 높이고자 했다. 나아가 규제는 억압적인 요소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편에서는 행위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규제를 통해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자율규제에 대한 기본 방침을 정한 인터넷신문협회와 신문윤리위원회는 뉴미디어를 선도하기 위해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제정하게 되었다.

### 3.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정

인터넷신문 심의에 대한 논의는 2005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일명 신문법의 적용 대상으로 인터넷신문을 포함시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2006년 5월 17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열린 '윤리위원-인터넷신문 발행인 워크숍'에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칙으로 한 윤리위원회의 인터넷신문 심의를 제안했다. 이 워크숍에서 인터넷신문협회 오연호 회장(오마이뉴스 대표)도 심의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어느 정도의 의견접근이 이루어졌다.

윤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 심의를 위해 윤리위원의 정원을 13인에서 15인으로 늘리고 그 늘어난 위원을 인터넷신문업계에서 추천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즉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그런데 2010년 봄 문화부에 요구했던 예산이 언론진흥기금에 편성되면서 인터넷신문 심의사업 논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신문윤리위원회에서는 인터넷신문에 맞는 새로운 윤리강령을 제정해 이를 준칙으로 인터넷신문을 심의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구성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신문윤리위원회는 6월 한국인터넷신문협회에 이 뜻을 밝히고 공동으로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인터넷신문협회에서 의견이 쉽게 모아지지 않아 여름을 넘기고

서야 제정위원회 인선에 착수할 수 있었다.

신문윤리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성병욱 전 중앙일보 주필을 추천하였고, 인터넷신문협회에서는 윤원석 민중의소리 대표를 협회 몫으로 추천했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초안을 작성할 언론학자로 이재진 한양대 교수, 법률적인 검토를 수행할 인사로 도두형 변호사를, 그리고 신문과 인터넷신문에서 두루 활동해온 김창희 전 프레스안 편집국장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2010년 10월 15일 5인으로 구성된 인터넷신문윤리강령제정위원회를 발족해 12월 초까지 6차례에 걸친 심도있는 토의와 연구 끝에 윤리강령 초안을 마련했다. 이 초안이 12월 20일 인터넷신문 발행인과 제작진, 언론학자 등이 참석한 공청회에 붙여져 거기서 나온 의견을 소위원회에서 수렴하고 2011년 1월 10일 제7차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했다. 제정위가 확정된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은 다음과 같다.

The Korean Code of Ethics for Internet News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인터넷신문에 종사하는 언론인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실현해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 언론인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만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서 우리 언론인 스스로 윤리기준을 세워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 이에 우리 언론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인터넷신문윤리기구의 준칙으로 삼을 것을 결의한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그 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인터넷신문 언론인의 윤리강령 준수에 조력한다.

2011년 1월 11일

**제1조 표현의 자유와 책임**

인터넷신문에 종사하는 언론인(이하 '언론인')은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건강한 공론장을 형성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언론인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보도의 목적으로 삼는다.
- ② (표현의 자유 옹호) 언론인은 건전한 여론의 형성에 장애가 되는 부당한 간섭을 배격하고, 이를 통해 편집의 자유,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다.
- ③ (언론의 책임) 언론인은 편집 및 표현의 자유가 이에 따르는 책임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명심하고, 건전한 여론의 형성, 공공복리의 증진, 문화의 창달,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노력한다.
- ④ (언론의 독립) 언론인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력 또는 세력으로부터 독립해 언론활동을 하고, 이러한 권력 또는 세력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한다.
- ⑤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 언론인은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노력한다.
- ⑥ (편견과 차별의 금지) 언론인은 인종, 민족, 지역, 신념, 종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고, 이러한 편견에 근거해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지 않는다.
- ⑦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 언론인은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견해에 유념한다.

**제2조 객관성 및 공정성**

언론인은 인터넷매체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해 신속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되, 그 보도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게이트키퍼에 유의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① (사실의 전달) 언론인은 취재 및 보도에서 사실의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② (사실과 의견 구분) 언론인은 독자가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표현하고 편집한다.
- ③ (균형 감각) 언론인은 경합하는 사실, 사람, 세력 등에 관한 취재 및 보도에서 균형 감각을 유지한다.
- ④ (보도의 완전성) 언론인은 취재 및 보도에서 가능한 한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 이해의 상충**

언론인은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익과 공적인 이익이 상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① (사적 이익추구 금지) 언론인은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언론인 개인과 언론사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에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② (이해관계 유의) 언론인은 본인 또는 친인척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취재 및 보도 행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 ③ (주식 등 거래의 제한) 언론인은 주식 및 증권과 관련된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식 및 증권의 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 ④ (부당한 집단 영향력 행사 금지) 언론인은 공동취재나 친목 또는 직업적 공동이익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하지 않고, 출입처와 기업 등 취재원에 대해 부당한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⑤ (광고판매 행위 요구 금지) 언론사는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언론인에게 광고판매를 요구하지 않고, 언론인도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4조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유해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① (취재시 보호책임자의 동의) 언론인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할 때에는 부모, 보호자 또는 학교장 등 보호책임자의 동의를 받는다.
- ② (성범죄 보도시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어린이나 어린이의 가족이 관련된 성범죄를 보도할 때 그 어린이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 ③ (유괴보도 제한 협조) 언론인은 어린이가 유괴된 경우 무사히 생환하는 데 모든 협조를 다하고, 특히 유괴된 어린이가 범인의 수중에 있는 때에는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 제한 요청에 응한다.
- ④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는다.

**제5조 취재기준**

언론인은 인터넷신문의 정착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취재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① (취재원의 신뢰성 확인) 언론인은 취재원의 신뢰성 유무를 늘 확인하고, 공공기관이나 각종 단체의 홈페이지 등과 같은 공개자료에 대해서도 취재시 그 정확성을 검증한다. 특히 취재원의 증언이 감추어졌던 사실의 폭로일 경우에는 그 의도와 정확성을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검증한다.
- ② (금품 또는 향응 수수 금지) 언론인은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받지 않는다. 특히 대가의 제공을 조건으로 접근하는 취재원을 경계하고, 취재 및 보도의 대가로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 ③ (프라이버시 보호) 언론인은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사적영역이나 제한된 공적영역을 방문해 취재하는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프라이버시 보호에 유의한다.
- ④ (재난 등 취재시 유의) 언론인은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하지 않고,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춘다.
- ⑤ (피해자 보호) 언론인은 비극적 사건 등으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과 그 친지들의 사인을 이용하거나 인터뷰를 할 때 특별히 주의한다.
- ⑥ (비윤리적 취재의 금지) 언론인은 경제적 이득과 관련된 방식이 아니더라도 도청, 비밀촬영, 신분사칭, 자료의 허가 없는 검색 및 반출, 기타 비윤리적인 방식에 의해 취재하지 않는다.

**제6조 보도기준**

언론인은 신뢰성이 높은 보도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① (취재원의 명시) 언론인은 기사의 취재원 또는 출처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취재원의 신원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익명으로 할 수 있다.
- ② (정확한 인용) 언론인은 취재원의 발언, 자료 등을 기사 중에 인용할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그 내용의 취지, 강조점 등을 보도의 목적에 맞게 변형하지 않는다.

- ③ (조사의 신뢰성) 언론인은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보도할 경우 그 조사의 신뢰성의 근거를 분명히 밝힌다.
- ④ (표절의 금지) 언론인은 기사작성에 있어 신문, 통신, 인터넷, 잡지, 사진, 이미지, 동영상, 음원, 기타 저작권 있는 출판물 등을 인용할 때 반드시 그 출처를 밝히고, 인터넷 댓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취재내용 등도 그 출처를 명시한다.
- ⑤ (반론권 보장) 언론인은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해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론기회를 주고, 사후에라도 반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한다.
- ⑥ (이미지 조작 금지) 언론인은 보도시 사진이나 영상의 이미지 조작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는다.
- ⑦ (선정보도 금지) 언론인은 성범죄, 폭력 등 기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하지 않으며, 범죄 수법을 과도하게 자세히 보도해 모방범죄를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⑧ (미성년자 및 성범죄 피해자 신원 보호) 언론인은 보도시 미성년(만 18세 이하) 형사 피의자와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⑨ (자살보도의 신중) 언론인은 자살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대중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제7조 편집기준**

언론인은 보다 품격 있는 인터넷신문의 제작을 위해 편집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① (과잉표제의 금지) 언론인은 편집시 기사의 제목이 기사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한다.
- ② (기사와 광고의 구분) 언론인은 독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편집한다.
- ③ (부당한 재전송 금지) 언론인은 기사의 페이지 뷰를 늘리기 위해 작위적으로 기사의 일부 내용 또는 제목을 변경해 재전송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8조 이용자 권리 보호**

인터넷신문은 건전한 여론형성의 장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되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① (이용자 참여 촉진) 인터넷신문은 이용자의 건전한 참여를 촉진하고 게시글을 부당하게 삭제하지 않는다.
- ② (다양한 정보접근의 보장)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하이퍼링크 등을 이용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하되, 원치 않는 선정적 기사나 광고에 접속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③ (댓글 이용시 저작권 유의) 인터넷신문은 댓글을 보도와 편집에 이용하는 경우 댓글 게시자의 저작권 보호에 유의한다.
- ④ (댓글의 인격권 침해 유의) 인터넷신문은 이용자의 게시글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경우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제9조 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

언론인은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그 결과 기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① (피해자 의견 청취) 언론인은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가능한 한 직접 듣도록 노력한다.
- ② (신속한 오보 수정) 언론인은 당사자의 소명 등에 의해 오보임이 확인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기사 내용을 수정한다.
- ③ (반론 또는 정정 보도문 게재) 언론인은 반론 또는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접근 및 접속이 용이하도록 편집에서 배려한다.

**제10조 언론윤리 교육 및 윤리기구 설치**

인터넷신문과 언론인은 취재, 보도, 편집 활동의 품위를 유지하고 인터넷신문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한다.

- ① (언론윤리 교육) 인터넷신문은 언론인이 가능한 한 정기적으로 언론윤리와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윤리기구의 설치) 이 윤리강령의 실천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운영한다.

#### 4. 인터넷신문심의위원회 발족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제정, 선포한 이후 2011년 6월 8일 인터넷신문심의위원회가 발족하였다. 발족과 동시에 성병욱 위원장이 취임하였으며 민경두 테일리팜 대표(한국인터넷신문협회), 황재활 한경닷컴 대표(한국온라인신문협회),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 국차장(한국인터넷신문협회·한국온라인신문협회), 이종혁 경희대 교수(한국언론학회), 오세창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시민단체)이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인터넷신문심의위원회는 발족 직후인 6월 24일부터 첫 심의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인터넷신문 윤리심의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